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7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 한정애·유의동·임종성

강득구 · 강병원 · 김남국

김수흥 · 김영배 · 김영호

김원이 · 김회재 · 남인순

노웅래 • 맹성규 • 박영순

박 정・백혜련・서범수

서영교 · 송갑석 · 송옥주

안규백 · 안병길 · 양경숙

양정숙 · 오영환 · 유동수

유정주 • 윤재갑 • 윤재옥

유준병 • 유후덕 • 이광재

이규민 • 이동주 • 이병훈

이용빈 · 이용선 · 이원욱

이장섭 • 이형석 • 장철민

전혜숙 · 조승래 · 진선미

최인호ㆍ허 영ㆍ허종식

홍성국 · 홍영표 · 홍정민

황보승희 의원 (52인)

제안이유

지난 1992년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리우선언'을 시

작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채택하면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등을 위하여 경제·환경·사회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화되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서 환경부소속으로 격하되었음.

그러나 환경과 경제만을 중심으로한 녹색성장의 개념으로는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세대는 물론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 간 형평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을 위한 국가적 미래 전략과 비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환경·사회적 담론의 협력과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함(안 제8조 및 제9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16조).
- 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를 두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위원회를 둠.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

-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21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구현하여야 함(안 제24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함(안 제26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의 관리, 지속가능한 물 관리, 녹색교통체계의 구축, 녹색건축물의 확대, 친환경·유기농 농림수산의 촉진, 지속가능한 관광의촉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 생활 운동의 촉진 및 관련 교육·홍보 등을 실시함(안 제38조부터 제50조까지).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함(안 제51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안 제52조).
- 차.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의안번호 제6733호),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기반으로 세대 간 형 평성을 추구하며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 릴수 있도록 녹색 전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고 미래지향적인 국 가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환경・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환경의 보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3. "지속가능한 사회"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기반으로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하여 인간·생명·생태·경제·사회 등의 가치와 존중을 통해 구성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 4. "녹색전환"이란 화석연료(化石燃料)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의 사회구조에서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재생에 너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사회구조로 변혁 및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 5.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흡수량을 합 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궁극적으로 무(無)가 되는 상태를 말한 다.
- 6. "세대 간 형평성"이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말한다.
- 7.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실천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 8. "녹색경제"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신속히 축소 및 최소화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 9.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 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10. "녹색산업"이란 제조·발전·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 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1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12. "녹색생활"이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 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 는 생활을 말한다.
- 13. "지속가능경영"이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윤리적 책임성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14. "기후위기"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후 위기를 말한다.
- 15. "온실가스"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 가스를 말한다.
- 16.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17. "자원순환"이란「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 18.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적 정의·포용성·안전과 통합을 강화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포용적 경제발전 추구,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하여 녹색전환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

하여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 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한다.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 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지속가능한 사 회 기반시설 마련을 위하여 녹색전환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 대학적 기반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 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도의 녹색전환을 지원한다.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견인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 환경·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추진계획,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또는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정의와 사회정의를 실 현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게 정보의 제공 및 재 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 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및 강화하 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와 자원고갈 및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 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
 을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와 지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에너지 정책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학생, 지역공동체, 기업 및 근로자 등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사회교육, 직업교육 등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강화하며, 녹색기술의 연 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스스로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위기 및 에너지·자원 고갈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지속가 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 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전 환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며 그 결과에 대하 여 책임을 공유(共有)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를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제8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 위한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시, 기후위기·에너지·산업·생태계·국토이용·교통·물·농수산·해양·산림·일자리·건강·빈곤·교육·성평등·세대간 형평성 등 경제·환경·사회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의 미래 전망과 목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의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한 경제·환경·사회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5.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제17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제9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 및 제17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 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가기본전략,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방기본 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에는 제2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 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

에 송부하여야 한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8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 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관계 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한다.
-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제1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1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1년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점검결과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보고서(이하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1년마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결과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보고서(이하 "지방지속 가능성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 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위원회

- 제18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를 둔다.
- 제19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미래세대 등에서 지속가능발전·녹색전환·기후위기·에너지·인권·평화·제도행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1. 기후위기 · 대기오염 · 에너지
- 2.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기술 · 일자리
- 3. 국토·물·자연·생태
- 4. 지속가능발전목표
- 5. 사회갈등조정 협치
- 6. 교육·정보·홍보·국내외 협력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⑥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녹색전환 추진단을 둔다.
- 8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⑨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8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7.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 8. 제16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9.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10. 제48조에 따른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11. 제50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2. 제51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3.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4.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5.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21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 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위원회

- 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9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8.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제5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0. 제51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1.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2.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 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3조(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6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 전환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경제체제의 구축

제24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정책 수립·시행할 때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추진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 고 배려하여야 한다.
- 제25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기존 산업의 녹색산업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4.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기·정보통신·교통시설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의 친환경 구조 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6.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녹색경제 · 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제26조(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의 공개
 - 3.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7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녹색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2. 녹색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4. 녹색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나노·생명공학 기술 등의 융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지식재산권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적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1항의 시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8조(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전환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송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반 확대
 - 2.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의 개발·보급
 - 3. 정보통신 산업 및 기기 등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 촉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있어 생활문화를 조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재택근무·영상회의·원격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송통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력 네트워크를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

- 융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의 개발
- 3.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추구하는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지속가 능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 •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 제30조(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 전환을 위하여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기업으로 한다.
 - 1. 제2조제9호에 따른 녹색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 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지원 사업

- 2. 제2조제10호에 따른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 3.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전환산업투 자회사(해당 회사의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 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회사의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은 금융위원회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나 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녹색 전환산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 등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검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조세 제도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

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 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 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 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취소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 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4.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5.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 제35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2.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제36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안 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

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할 수 있다.

- 제37조(규제의 선진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자가 스스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자가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규제에 대한 국내외 실태조사 등을 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중복을 피하는 등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제6장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제38조(지속가능한 국토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지속가능한 국토"라 한다)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토는 녹색전환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 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 환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 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 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 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 제39조(지속가능한 국토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38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국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폭염·홍수·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예방 및 저 감
- 2. 통신·에너지·수자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의 입지 안전성 강화
- 3. 에너지 · 식량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 마을의 확대
- 4. 산림·녹지의 확충 및 농지·습지의 보전
- 5. 토양 유실 방지 및 지하수 함양 기능 강화
- 6.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 · 이용 · 보존
- 7. 지속가능한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지속가능한 항만으로의 전환
- 8. 녹색 교통체계의 확충
-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 제40조(지속가능한 물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

자원의 확보

- 2. 수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수질개선
-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 · 복원
- 5. 수질오염 예방·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제41조(녹색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교통(이하 "녹색교통"이라 한다)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의 근간이 되도록 철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자전거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2. 버스 · 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확 대·구축
- ⑤ 정부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2조(녹색교통의 관리) 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경쟁 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어

- 느 한 기준을 택하여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고효율교통수단의 제작·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 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 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4조(친환경·유기농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 ·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제45조(자원순환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 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 3. 폐기물 최소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촉진
- 4. 제품의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분리 배출하는 등 교육・정보・홍보 정책의 강화와 실천에 관한 지원 제46조(지속가능한 관광의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

- 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국민 모두가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7조(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화의 생산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의 생산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8조(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관하여 정보를 보급하 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 릭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운영, 자료 제출의 범위·방법, 연구센터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지속가능발전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 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50조(지속가능발전과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확대 함으로써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녹색전환 정책과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관해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 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전환 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 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1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의제21, 요하네스버그 추진 계획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 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 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

- 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가 지속가능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2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 시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한다.
 -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 2. 제10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 · 변경
 - 3.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4.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③ 숙의공론화장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국가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며, 의견서와 반영 등에 관한 결과를 제4 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공개한다.

제7장 보칙

- 제53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 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 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4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 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전환에 관 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5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및 제17조제2 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수립·변경 또는 작성하였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 한 녹색전환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43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 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지방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8조제 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18조에 따

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녹색생활"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42조"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 본법」 제41조에 따른 녹색교통체계의 구축"으로 한다.

⑥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제4호 중"「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 를"「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 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 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본법제44조제1항"을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본법제4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기본법제42조제6항·제9항만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를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제38조제1항제1호(같은 법제19조제2항・제5항만해당한다)부터제2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로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업체"로 한다.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국가위원회"로 한다.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44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로 한다.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

2조제5항"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를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전환"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9조제4호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④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를 ""지속가능경영"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속가능

경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녹색경영체제"를 "지속가능경영체제"로, "녹색경영"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녹색경영"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4호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녹색경영"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녹색경영"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녹색경영"을 각각 "지속가능경 영"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녹색경영"을 "지속가능경영"으로 한다.